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송언석·김종양·성일종

인요한 · 정희용 · 김승수

김상훈 • 박정하 • 박충권

김형동 · 최은석 · 권영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 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 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 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 련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관리 및 장기재정전망의 추계 및 재전망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

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

- 1)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 2)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또는 「국회법」에 따른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지출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교 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 경우 그 결과 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3)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

전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등과 관련된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보시스템 등 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 정건전화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안 제16 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재정건전화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 속가능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정건전화"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공공기관의 장"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연금 또는 보험을 말한다.

- 6. "장기재정전망"이란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 공기관의 장(이하 "중앙관서등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건전화를 위 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전략위원회) ① 재정건전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 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여부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등 이행상황의 관리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이행상황 의 점검·보완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이행 권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제13조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추계(推計) 및 재전망
-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 정보 및 통계에 대한 운영 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8. 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 · 추진 및 제도 개선
- 9.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를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 10. 그 밖에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국회예산정책처장
- 3. 기획재정부차관 중 재정을 담당하는 차관
- 4. 한국개발연구원장
-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6. 재정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 나.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등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정부는 국가채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채무총 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가채무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또는 경제협력 등으로 대내 외 재정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로 한다.
- 1. 「국가재정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전채무.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는 제외한다.
- 2.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채무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초과한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감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2. 조세감면의 축소,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 3.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4.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및 결산상 잉여금 의 관리 계획
- 5. 그 밖에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방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축계획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채무의 감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감축방안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100분의 4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5년 마다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채무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수지의 관리) ① 정부는 재정수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관리재정수 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 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등) ① 국회와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 또는 「국회법」 제3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 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 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률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 1.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 2.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계 및 재원조달방 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중앙관서의 재정건전화계획)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분야 에 대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국가재정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매년 1월 3 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재정 관련 제도의 개선 또는 재정건 전화계획의 이행 등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 기준,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①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내용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도에 관한 내용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건 전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점 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장기재정전망)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정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 ① 사회보험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계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험의 재정건 전화를 위한 절차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6조(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 ① 중앙관서등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수립 및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정건전화계획등"이라 한다) 과 관련된 재정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재정건전화계획
 - 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 다.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1호에 따른 재정정 보 및 통계의 공개
 - 3. 국민 또는 재정건전화계획등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건전화계획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등의 장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그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등의 장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와 관련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중앙관서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관서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관서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기획 재정부장관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운영 실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채무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① 제9 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부터 시행한다.
 - ② 제9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